

춘천지방법원 2019. 5. 29 선고 2019가단154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19. 5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화천군 C 잡종지 430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51.84㎡ 지상의 조립식 철판지붕 단층 자동차 관련시설 1동 51.84㎡와 별지 도면표시 4, 3, 6, 5,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다)부분 48.51㎡ 지상의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1동 48.51㎡를 각 철거하고 위 별지도면 (나)부분 51.84㎡와 (다)부분 48,51㎡의 각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류영재

별지